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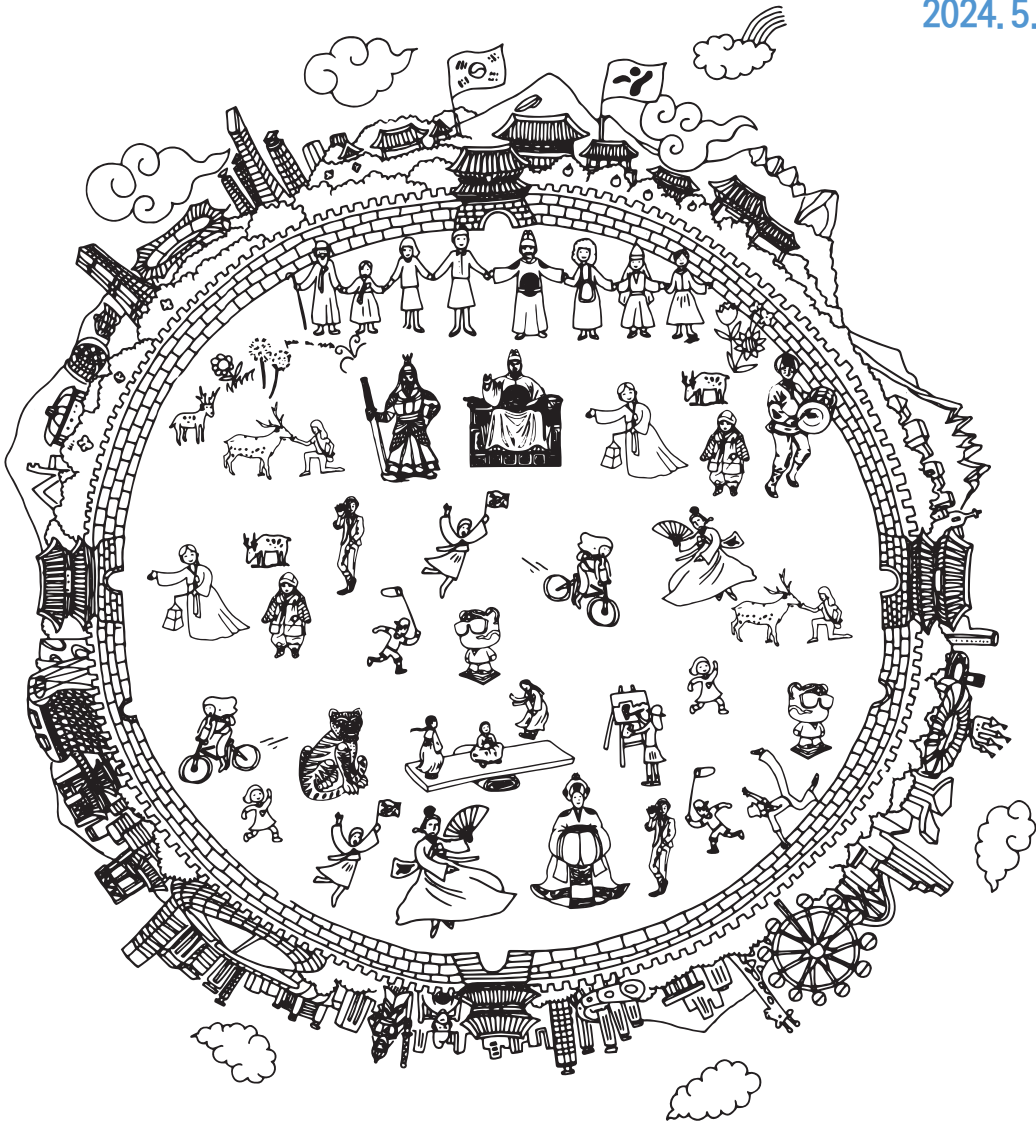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982호
2024. 5. 31.(금)



목 차

◆ 공 고

제2024-1677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1677호

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전 추가 공고

지방자치법 제55조(제출안전의 공고)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31일

서울특별시장

구분	연번	제출 안전명	실·본부·국
동의안 (2건)	1	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	관광체육국 (관광정책과)
	2	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(신규) 동의안	재난안전관리실 (도로관리과)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24년 월 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서울 외래관광객 3천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 중임
- 나. 시장별 차별화된 글로벌 마케팅 추진 및 신규 도시브랜드 활용 서울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확산을 통해 파급력을 극대화하고자 함
- 다. 이에, 글로벌마케팅 및 국내·외 관광콘텐츠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, 서울관광재단에 출연코자 하며,
- 라.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관광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 무 명 : 서울관광재단 출연금
- 2)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3) 필 요 성
 -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재도약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서울 방문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계기 마련
 - 시장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서울관광 콘텐츠의 전방위적인 노출·확산을 통해 전 세계 관광시장 여행수요 선점
- 4) 사무내용
 - 글로벌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확산
 - 신규 도시브랜드 활용 관광기념품 제작 및 홍보마케팅

나. 서울관광재단 기관 개요

- 1) 소 재 지 :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
- 2) 규 모 : 전용 6,941㎡, 9개 층(지상1층 일부, 4~11층, 6,941㎡)

다. 소요예산 : 932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조치사항 :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이사회 회의록 및 결산보고서 각 1부.

도로사업소 테니스장 민간위탁(신규) 동의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24년 월 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도로사업소 테니스장」은 당초 직원들이 이용하던 테니스장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
나. 테니스장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항상 경기에 적합한 최상의 코트관리와 초심자 테니스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테니스장 관리·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민간의 숙련된 경험과 전문적 관리 능력·기술 등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

다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 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업 :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·운영
- 위탁대상 : 동부·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(총 4면)
- 위탁방식 : 자립형 민간위탁
- 위탁기간 : 2024.8.1.~2027.7.31.(3년)
- 수탁기관 선정 방법 : 공개모집
- '25년 소요예산(안) : 운영비 지원 없음(자립형으로 이용료 수익금 등으로 운영)

나. '24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권고)

〈 권고내용 〉

1. 시설이용이 특정인·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관리 철저
2. 유사시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 산정 및 수탁기관의 과도한 수익추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

다. 위탁내용

- 테니스장 이용자 예약관리 및 이용료 징수 등 이용자 관리
- 수준별 강습 프로그램 운영
- 코트, 대기실, 조명시설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(점검·정비 등)
- 테니스장 이용 관련 민원처리
-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등

라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
 -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테니스장 이용 서비스 제공은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촉진하는 것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,
 -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테니스장 이용자 관리부터 시설정비,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테니스장 관리·운영의 전문성 및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

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-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

제16조(생활체육의 진흥)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·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
- 1의2.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
2.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
3.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지원

4.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·외 교류 지원
5. 자치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지원
6.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
7.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
8.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
9.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
10. 그 밖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양재신 (☎ 2133-8160)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